

퀄컴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이 호 영**

I. 서 론

다국적 기업 퀄컴사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의 법 집행은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향후 경쟁법 집행에 관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공정위는 2009년 12월과 201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퀄컴사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essential Patents) 라이선스 관련 행위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또는 ‘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동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고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는데,¹⁾ 이를 통하여 좁게는 공정거래법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 위반행위의 평가와 관련하여, 넓게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지식재산권 행사행위의 관계와 관련된 다수의 쟁점에 관하여 중요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우선, 위 사건들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빈약했던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에 관하여 본격적이고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경쟁당국인 공정위뿐만 아니라 퀄컴사와 그를 대리한 국내외 법률대리인, 퀄컴사의 경쟁사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그들을 대리한 법률대리인, 그리고 공정위의 판단을 돕거나 퀄컴사 또는 이해관계자의 입장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3769).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281호(2009. 12. 30)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7-25호(2017. 1. 20). 아래에서는 전자를 ‘제1차 퀄컴 사건’이라고, 후자를 ‘제2차 퀄컴 사건’이라고 한다.

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내외 경쟁법, 특허법 및 경제학 전문가들이 문제로 된 행위의 경쟁제한적 효과, 그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 그 특허법적 함의 등을 둘러싸고 장기간에 걸쳐서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실제로 위 사건들을 계기로 국내에서 표준필수특허 관련 경쟁법 논문의 발표가 급격히 증가하였고,²⁾ 각종 학술대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주제가 활발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위 사건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가장 큰 메시지는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경쟁법 집행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국내외에서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계약법이나 특허법 등의 사법적 구제수단이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경쟁법 집행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들이 꾸준히 제시되었는데,³⁾ 위 사건들에서 공정위는 비록 FRAND 확약이 표면적으로 표준화기구의 표준선정절차에 참여한 사업자들 간 사적 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특허권자가 제출한 FRAND 확약이 중요한

2) 위 사건들과 역시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의 독점규제법 위반 여부가 문제로 되었던 삼성전자 대 애플사 사건이 직접·간접적인 계기가 되어 발표된 선행연구로서 홍대식·권남훈,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와 한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3호(2011), 오승환, “표준개발 과정에서 제출된 FRAND 의무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경제법연구』, 제11권 제2호(2012), 이황, “FRAND 확약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기준”, 『저스티스』, 통권 제129호(2012), 이호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1권 제4호(2013), 이문지, “FRAND 확약 위반과 표준특허권 침해금지청구”, 『경쟁법률』, 제25집 제1호(2014), 오승환, “FRAND 확약 특허권자의 자발적 실시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 『경쟁법연구』, 제29권(2014), 이문지, “표준특허 FRAND 실시로 산정의 기준”,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4호(2015), 홍대식,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릴컴 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4권 제11호(2015), 오승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경쟁법연구』, 제34권(2016), 홍명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 규제 가능성 검토”, 『경쟁법연구』, 제34권(2016) 등을 들 수 있다.

3) 예컨대, 외국 문헌으로서 Damien Geradin & Miguel Rato, “Can Standard-setting Lead to Exploitative Abuse?”, 3 European Competition Journal 101 (June 2007); Damien Geradin “Pricing Abuses by Essential patent Holders in a Standard-Setting Context: A View from Europe”, 76 Antitrust L.J. 307 (2009); Joshua D. Wright, “Federalism, Substantive Preemption, and Limits on Antitrust: An Application to Patent Holdup”, 5 J. of Law & Econ. 469 (2009); Joanna Tsai & Joshua D. Wright, “Standard Set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Role of Antitrust in Regulating Incomplete Contracts”, 80 Antitrust L.J. 157 (2015), 국내 문헌으로서 이황,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공개의무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 대한 경쟁법의 접근”, 『산업재산권』, 제36호(2011), 홍대식·권남훈,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와 한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고려법학』, 제63호(2011) 및 홍대식·권남훈, “표준화와 특허권 행사, 경쟁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쟁저널』, 제157호(2011) 등을 들 수 있다.

경쟁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법이나 특허법 등 사법적 구제수단에 일임하지 않고 적극적인 경쟁법 집행을 통하여 이를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하고 그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임을 명확하게 선언하였다.

그밖에도 위 사건들에서 문제로 된 퀄컴사의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 역시 이미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가하였거나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관련 쟁점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비교라는 측면에서도 유용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제1차 퀄컴 사건은 공정위가 표준필수특허 행사행위를 법 위반으로 인정한 첫 사례인데⁴⁾ 이와 함께 문제로 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매우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현재 EU의 경쟁당국인 유럽 집행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⁵⁾ 제2차 퀄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2015년 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였고,⁶⁾ 2017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위반한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연방지방법원에 당해 행위의 중지 및 법 위반의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구하는 집행을 소를 제기하였으며,⁷⁾ 2017년 10월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대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⁸⁾

4) 제1차 및 제2차 퀄컴 사건 이외에 공정위가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사례로서는 10여개 국가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 특허분쟁을 배경으로 전자가 후자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필수특허 침해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공정위 보도참고자료,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침해금지청구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2014. 2. 25), 세계 여러 나라의 디지털 방송용 표준 오디오 코덱, DVD, 블루레이 등 매체의 표준 오디오 코덱에 해당하는 AC-3 등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돌비 라버러토리즈 라이선스사 등이 해당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들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건(공정위 의결 제2015-125호, 2015. 8. 3.), 그리고 기업결합 사건으로서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사건(공정위 보도자료,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 조건 없이 승인”, 2013. 3. 8.)과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기업결합 사건(공정위 의결 제2015-316호, 2015. 8. 24.) 등을 들 수 있다.

5) European Commission - Press release, “Antitrust: Commission sends two Statements of Objections on exclusivity payments and predatory pricing to Qualcomm” (8 Dec. 2015).

6) United States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Qualcomm Incorporated - FORM 8-K Current Report (Feb. 9, 2015).

7)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Case 5:17-cv-00220, Federal Trade Commission’s Complaint for Equitable Relief (Jan. 17, 2017).

아래에서는 우선 두 차례에 걸친 퀄컴 사건의 경과와 공정위의 의결 내용 등을 순서대로 쟁점별로 살펴보고,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기로 한다(Ⅱ 및 Ⅲ).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Ⅵ) 글을 맺기로 한다(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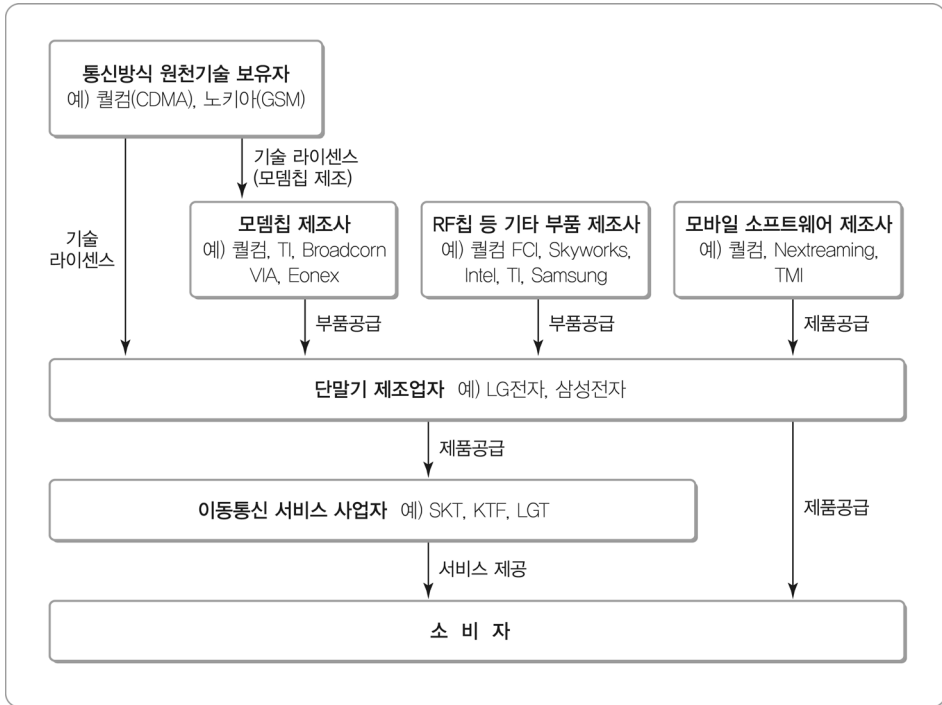
Ⅱ. 제1차 퀄컴 사건의 경과 및 공정위의 의결 등

1. 대상 행위 및 사건의 경과

퀄컴사는 한국 정부가 제2 세대 이동통신표준으로 선정한 CDMA 통신기술 관련 특허의 90% 이상을 보유함과 동시에 CDMA 방식 휴대폰의 제조에 필요한 CDMA 모뎀칩과 RF칩을 제조·판매하여 당해 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위를 가지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이다. 그런데 퀄컴사는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CDMA 관련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해주면서 모뎀칩을 제조·판매할 권리와, 그 모뎀칩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제조·판매할 권리를 분리하여, 이를 각각 경쟁 모뎀칩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스해주고 로열티를 징수하는 독특한 라이선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다.

8) Bloomberg, “Qualcomm Fined Record \$773 Million in Taiwan” (Oct. 11, 2017). 그 밖에도 2009년 9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사가 일본 휴대폰 제조사들과 CDMA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 해주거나 자신과 자신의 고객 및 라이선시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주장하지 말도록 약정한 행위가 일본 사적독점금지법상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배제조치를 명한 바 있다(<http://www.jftc.go.jp/en/pressreleases/yearly-2009/sep/individual-000038.html>).

[그림 1] CDMA 표준기술 관련 시장의 구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퀄컴사의 모뎀칩 시장 독점력 남용 시정조치” (2009. 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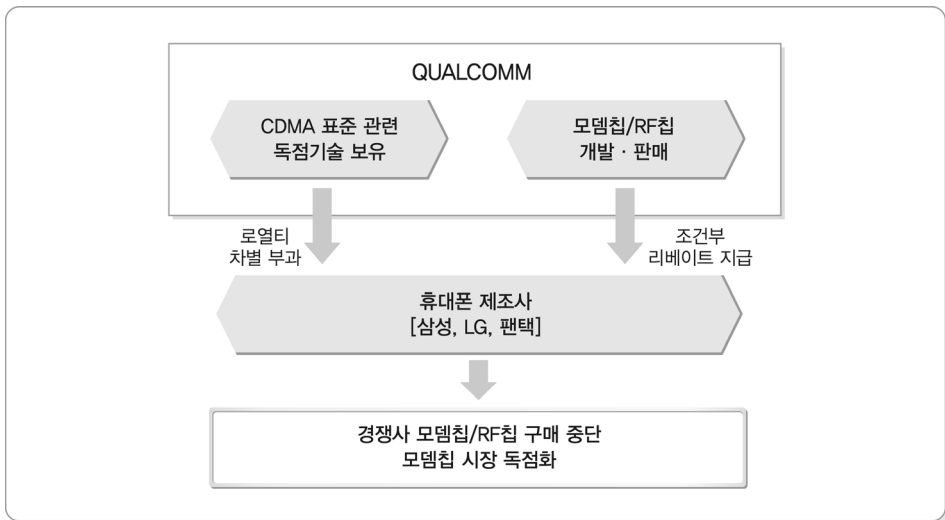
제1차 퀄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행위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4년경부터 상류시장(upstream market)이라고 할 수 있는 CDMA 표준 관련 특허기술 시장에서 자신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에 대한 로열티를 책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휴대폰 판매가격에서 자신으로부터 구입한 모뎀칩·RF칩 등 부품 가격을 공제하고, 자신으로부터 구입한 모뎀칩을 장착한 휴대폰에 대한 로열티 부과율을 인하하거나 로열티 상한금액을 낮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으로부터 구입한 부품의 수량이 많을수록 로열티가 저렴하게 산정되도록 하였다(‘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

둘째, 2000년경부터 하류시장(downstream market)이라고 할 수 있는 CDMA 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모뎀칩과 RF칩을 공급하

면서, 각 휴대폰 제조사별로 산정한 기준 수량 또는 각 휴대폰 제조사의 부품 수요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당한 액수의 리베이트를 소급적·누진적으로 지급하였다(‘조건부 리베이트 지급행위’).

셋째, 1993년경부터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CDMA 및 WCDMA 표준 관련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해주면서 그 계약서에 해당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종전 로열티의 50%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후 이를 계속 유지하였다(‘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부과행위’).

[그림 2] 제1차 퀄컴 사건 행위의 구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퀄컴사의 모뎀칩 시장 독점력 남용 시정조치” (2009. 7. 23)

2006년 2월 공정위는 위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하고, 동년 4월 퀄컴사 및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행위에 대한 2개 국내 회사와 2개 외국 회사의 신고를 접수한 뒤, 2007년 8월부터 퀄컴사 등에 대하여 4회에 걸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결국 조사를 개시한지 3년이 경과한 2009년 2월에서야 심사보고서를 완성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2009년 5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6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진행한 후, 2009년 7월 23일 이 사건 행위들이 공정거

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들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약 2,731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⁹⁾

그 후 퀄컴사는 위 공정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6월 이 사건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퀄컴사 이외에 이 사건 행위를 직접 결정하지 않은 퀄컴사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부분과 이 사건에서 실제 문제로 된 ‘모뎀칩 및 RF칩’이 아니라 ‘부품’으로 표현한 부분을 취소한 것을 제외하고, 공정위의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을 모두 수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¹⁰⁾

2. 공정위의 의결 등

공정위는 제1차 퀄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세 가지 행위 중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는 법 제3조의2가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법 제23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그리고 특허 소멸 후 로열티 부과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¹¹⁾

(1)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

공정위는 퀄컴사의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를 검토하면서 그 전제로서 동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가 형성되는 시장으로서 관련 상품시장을 ‘CDMA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퀄컴사가 보유한 특허기술 전체 시장’으로, 관련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획정하였고, 그 시장지배적지위가 행사되는 시장으로서 관련 상품시장을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으로, 관련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시장 획정을 전제로 퀄컴사가 관련시장에서

9)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위, 퀄컴사의 모뎀칩 시장 독점력 남용 시정조치”(2009. 7. 23) 및 공정위 의결 제2009-281호(2009. 12. 30).

10) 서울고법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 이 판결에 대해서 상고가 제기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3두14726 사건).

11) 공정위 의결 제2009-281호(2009. 12. 30).

완전한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고 신규진입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위 행위에 적용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는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모뎀칩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로열티 부과율 등의 거래조건을 달리 정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V. 3. 라. (2))로서 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또한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가목)로서 법 제23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차별적 취급’(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공정위는 위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2007년 대법원이 POSCO 사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¹²⁾ 그 이후 각급 법원이 이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서 이제는 확립된 판례 법리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제1차 및 제2차 쉐컴 사건에서 이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문제로 된 행위들의 부당성을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의 경쟁제한적 의도·목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가 이루어진 그 시점, 문제로 된 라이선스 계약상 자신의 모뎀칩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FRAND 조건의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쉐컴사의 내부 자료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적 의도·목적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위 행위의 경쟁제한의 우려와 관련하여, 표준화기구들이 FRAND 조건의 협약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표준설정으로 인하여 획득한 독점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FRAND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 자체

12)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로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는 CDMA 표준 관련 FRAND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히,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가 FRAND 조건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수직적으로 통합된 독점사업자의 차별행위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 사건 로열티 차별의 정도와 그 기간이 상당한 점, 휴대폰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 치열하다는 점,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의 우려를 인정하였다.¹³⁾

또한 공정위는 이 사건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퀄컴사의 지위를 유지·강화한 점,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점, 로열티 차별의 정도 및 지속성에 비추어 볼 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차별적 취급(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에도 해당된다고 하였다.

(2)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행위

공정위는 퀄컴사의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검토하면서 그 전제로서 모뎀칩 관련 리베이트의 관련 상품시장은 ‘CDMA2000 방식 모뎀칩 시장’으로, RF칩 관련 리베이트의 관련 상품시장은 ‘CDMA2000 RF칩 각 세부 칩 시장’으로 확정하고,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시장 획정을 전제로 퀄컴사가 관련시장에서 각각 98% 및 70% 이상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당해 시장의 신규진입 역시 곤란한 점 등을 근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위 행위에 적용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과 관련하여, 이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제품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규모 이상 구매하는 경우 기존 구입 물량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비

13) 추가적으로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제품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가격인하가 저해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록 부과된 조건이 100% 배타조건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고, 특히 퀄컴사는 경쟁사업자들과는 달리 관련 분야 특허까지 보유하면서 모뎀칩·RF칩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타조건부 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항 제2호)로서 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공정위는 이 사건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행위의 경쟁제한적 의도·목적과 관련하여, 리베이트의 제공 시기, 퀄컴사의 내부 자료, 그리고 리베이트 지급구조가 거래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고 소급적·누진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적 의도·목적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위 행위의 경쟁제한의 우려와 관련하여, 퀄컴사의 시장지배적지위가 확고한 점, 이 사건 리베이트 지급구조가 휴대폰 제조사의 수요량 대부분을 퀄컴사로부터 구입하도록 설계되었고 누진적·소급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지급기준이 거래상대방에 따라 다르고 복잡·불투명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의 가격비교를 하기 어렵게 한 점, 리베이트 제공기간이 장기간이고 경쟁사업자의 진입 및 확장 시기에 제공되었다는 점 및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경쟁자 배제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의 우려를 인정하였다.¹⁴⁾

(3)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부과행위

공정위는 퀄컴사가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과 CDMA 및 WCDMA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수정하면서,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로열티의 일정 부분을 계속 지급하도록 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먼저, 퀄컴사는 CDMA 및 WCDMA 관련 표준필수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인 휴대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용 부품 및 장비 제작 업체들이 CDMA 및 WCDMA 방식 이동통신용 부품과 휴대폰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퀄컴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고, 거래대상이 배타적 지배권이 인정되는 특허기술이므로 CDMA 및 WCDMA 이동통신 관련 기술시장에서 퀄컴사

14) 추가적으로 공정위는 이 사건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이 축소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특허권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인점, 퀄컴사 역시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부과 조항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라이선스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점, 특허권의 취지상 특허기술의 독점적 실시권은 일정기간 동안만 인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부과행위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나 기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주요 쟁점별 판단

제1차 퀄컴 사건 공정위의 심의·의결 및 서울고법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퀄컴사는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반론과 그에 대한 공정위 및 서울고법의 판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퀄컴사는 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인 각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을 부과하였으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의 내용을 원용하면서 차별행위는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같이 구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래조건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였고,¹⁵⁾ 서울고법 역시 법상 차별행위는 반드시 복수의 거래상대방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격차별행위는 반드시 둘 이상의 구매자 사이에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의 구매자에 대하여 구체적 조건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할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였다.¹⁶⁾

둘째, 퀄컴사는 이 사건 로열티를 산정하면서 자신으로부터 구입한 부품가격을 공제한 것은 1993년 당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제정한 ‘표준기술도입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수출용 휴대

15) 공정위 의결 제2009-281호(2009. 12. 30), 38면.

16) 서울고법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 10면.

폰에 대한 로열티 부과율을 인하하고 상한금액을 하향 조정한 것은 휴대폰 제조사들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이므로 경쟁제한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표준기술도입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경쟁제한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고, 문제로 된 2004년 라이선스 계약은 1993년 계약과는 전혀 다른 계약이며, 휴대폰 제조사들은 로열티 부담 완화를 요구하였을 뿐인데 퀄컴사가 이를 계기로 로열티 차별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하였다.¹⁷⁾ 또한 서울고법 역시 유사한 근거로 경쟁제한의 의도가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특히 1996년 우리나라 CDMA 이동통신표준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퀄컴사가 FRAND 확약을 제출함으로써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이 사건 부품가격공제 조항이 FRAND 확약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04년 라이선스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유지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다.¹⁸⁾

셋째, 퀄컴사는 이 사건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그 성질상 가격할인행위로서 막강한 구매력을 지닌 휴대폰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이 사건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단순한 대량 구매 할인이 아니라 그 제공 의도나 배경, 제공시기, 소급적·누진적 지급구조 등에서 경쟁사업자 배제의 목적이 확인된다고 하였다.¹⁹⁾ 또한 서울고법 역시 이 사건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행위에 적용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유형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일반적이라고 한 선판결례²⁰⁾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리베이트 지급에 관하여 배타조건이 부가된 경위, 퀄컴사의 내부 문서에 나타난 동기, 이 사건 이외에 총 수요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구매를 조건으로 한 리베이트 지급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의 의도·목적이 인정된다고 하였다.²¹⁾

17) 공정위 의결 제2009-281호(2009. 12. 30), 59면.

18) 서울고법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 15면.

19) 공정위 의결 제2009-281호(2009. 12. 30), 94면.

2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21) 서울고법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 28면.

넷째, 퀄컴사는 이 사건 로열티 할인 및 리베이트 지급은 결국 모뎀칩 가격을 할인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할인된 가격이 비용수준에 미달하는 소위 ‘약탈적 가격책정’(predatory pricing)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당한 가격경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²⁾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성은 해당 행위의 의도, 가격차별의 정도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용-가격 테스트는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이지 유일한 판단기준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신뢰할 만한 비용·가격 데이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고 규모의 경제나 브랜드 효과가 존재할 경우 유효가격이 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수 있는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가격이 비용을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제한적 효과를 부인하기 어려우며,²³⁾ 특히 동등 효율 경쟁자 가정에 입각한 비용-가격 테스트는 여러 가지 이론적·기술적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면서 퀄컴사가 제출한 비용-가격 테스트의 신뢰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⁴⁾

서울고법 역시 이 사건 행위는 단순히 모뎀칩의 가격을 할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동통신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는 퀄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공급하는 모뎀칩을 구매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또한 수요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구속력이 있는 배타조건을 부가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가격할인행위와 같이 볼 수 없고 로열티 할인과 리베이트 제공으로 할인된 모뎀칩의 실질 판매가격이 비용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하였다.²⁵⁾

그밖에도 퀄컴사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모뎀칩·휴대폰·서비스 등 모든 공급단계에서 가격이 인하되고 전반적인 판매량이 증가하고 기술 혁신 및 제품의 다양성도 증가하는 등 친경쟁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⁶⁾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위와 같은 친경쟁적 효과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효율성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실현을 위한 이 사건 행위의

22) 공정위 의결 제2009-281호(2009. 12. 30), 60면 및 124면.

23) 공정위 의결 제2009-281호(2009. 12. 30), 61면.

24) 공정위 의결 제2009-281호(2009. 12. 30), 124-126면.

25) 서울고법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 30-31면.

26) 공정위 의결 제2009-281호(2009. 12. 30), 129면.

필수성 및 최소 경쟁제한성, 부정적 효과의 상쇄 등 효율성 항변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였다.²⁷⁾ 서울고법 역시 퀄컴사가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모뎀칩을 공급하였으므로 독점화의 폐해나 우려가 발생하지 않았고, 모뎀칩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산출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성능과 품질 역시 급격하게 향상되었으며,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이중한계화와 과소투자 문제가 해결되는 등 친경쟁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격 하락, 산출량 증가, 성능 개선 등은 이동통신 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이를 이유로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만한 친경쟁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행위의 독점화 폐해가 없었다거나 이중한계화와 과소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²⁸⁾

Ⅲ. 제2차 퀄컴 사건의 경과 및 공정위 의결 등

1. 대상 행위 및 사건의 경과

제2차 퀄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제1차 퀄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행위와 다르지만 퀄컴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자신이 제출한 FRAND 확약을 위반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해주는 동시에, 하류시장인 휴대폰 부품 시장에서 가진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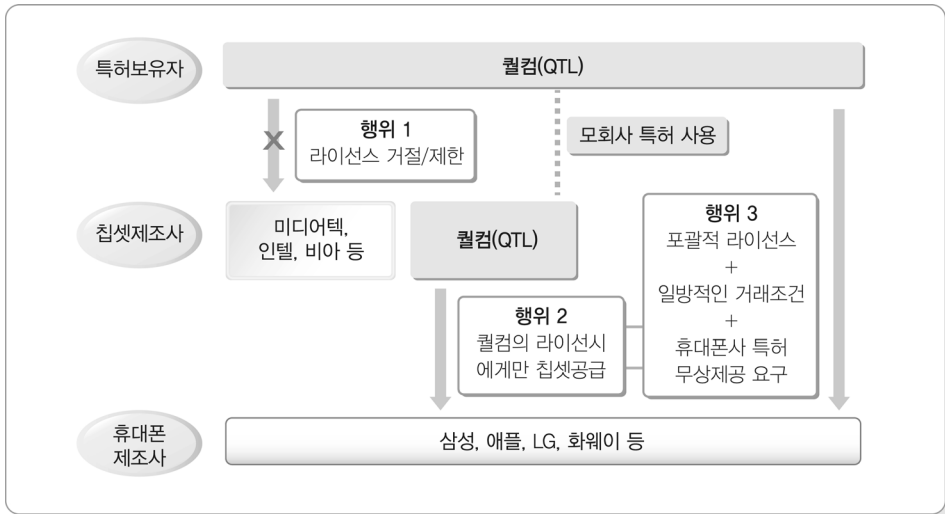
퀄컴사는 제2 세대 이동통신표준인 CDMA 방식에 관한 표준필수특허의 절대 다수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 세대 이동통신표준인 WCDMA 및 제4 세대 이동통신표준인 LTE 방식에 관한 표준필수특허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과 동시에 각 이동통신표준 방식 휴대폰용 모뎀칩셋 시장에서 높은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라

27) 같은 면.

28) 서울고법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 32-33면.

이전스해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대신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해주면서, 모뎀칩셋 시장에서 가진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한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3] 제2차 퀄컴 사건 행위의 구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퀄컴사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엄중 제재” (2016. 12. 29)

제2차 퀄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행위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8년 이전에는 제1차 사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한 자신의 특허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각각 라이선스해주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모뎀칩셋의 사용 권한을 제외하고 모뎀칩셋의 판매처를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로 제한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해주지 않는 대신 부제소의 약정이나 보충적 권리행사의 약정, 또는 한시적 제소유보의 약정만을 체결하였다(‘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거절·제한행위’). 이로 인하여 휴대폰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퀄컴사 또는 다른 모뎀칩셋 제조사로부터 칩셋을 구입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반드시 퀄컴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둘째, 휴대폰 제조사에 자신의 모뎀칩셋을 공급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그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칩셋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였다(‘모뎀칩셋의 공급과 라이선스의 연계행위’).

셋째, 휴대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 목록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표준필수특허와 기타의 특허를 포함한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전체 휴대폰 가격의 일정 비율로 책정하고, 계약기간을 장기 영속적인 것으로 정하고, 무상의 크로스 그랜트를 요구하고 퀄컴사의 칩셋을 사용하는 다른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그 특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소위 ‘특허우산’의 구축) 하였다(‘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행위’).

2014년 8월 공정위는 위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하여, 동년 8월 퀄컴사에 자료를 요구하고 2015년 3월 퀄컴사의 한국 내 자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2015년 11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완성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퀄컴사 등에 송부하였는데, 퀄컴사는 의견서 제출기한을 세 차례나 연장한 끝에 2016년 5월말 경에서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퀄컴사는 공정위 전원위원회가 2016년 7월 이후 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진행한 후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는데, 전원위원회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의를 재개하여 2016년 12월 21일 이 사건 행위들이 법상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이들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모뎀칩셋 제조사 및 기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의 수정을 희망하는 휴대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수정하는 절차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약 1조 3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²⁹⁾

2. 공정위의 의결

공정위는 제2차 퀄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세 가지 행위 중 표준필수특허 라이

29) 공정위 보도자료, “퀄컴사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엄중 제재”(2016. 12. 29) 및 공정위 의결 제2017-25호(2017. 1. 20). 공정위의 위 처분에 대해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서울고법에 계속 중이다. 또한 위 과징금은 현재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에 해당한다.

선스 거절·제한행위는 법 제3조의2가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모뎀칩셋의 공급과 라이선스를 연계시킨 행위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각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 제23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³⁰⁾

(1)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거절제한행위

공정위는 제2차 퀄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행위들을 검토하면서 그 전제로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련 상품시장을 ‘CDMA, WCDMA 및 LTE 등 각 표준에 포함된 특허기술 중 퀄컴사가 보유한 전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으로, 관련 지리적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확정하였고,³¹⁾ 모뎀칩셋 관련 상품시장을 ‘CDMA, WCDMA 및 LTE 등 각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으로, 관련 지리적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확정하였다.³²⁾ 위와 같은 관련시장 획정을 전제로 각 이동통신표준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퀄컴사가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다른 대체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하였고, 각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도 퀄컴사가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당해 시장에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위 행위에 적용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거절·제한행위는 모뎀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표준필수특허의 개념 및 본질에 반하고, 스스로 제출한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필수요소에 해당하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30) 공정위 의결 제2017-25호(2017. 1. 20).

31) 제1차 퀄컴 사건에서 공정위는 CDMA 표준에 포함된 표준필수특허 관련 지리적 시장을 ‘국내 시장’으로 확정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 역시 이를 수용한 바 있다.

32) 제1차 퀄컴 사건에서 공정위는 CDMA2000 방식 모뎀칩셋 관련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확정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 역시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V. 3. 라. (2))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로서 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공정위는 위 행위의 경쟁제한적 의도·목적과 관련하여, 퀄컴사는 상류시장과 하류시장 양자에서 모두 지배적지위를 가지는 수직적 통합사업자로서 경쟁을 제한할 유인과 그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 점, FRAND 확약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사업에 관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라이선스를 거절한 점, 정작 자신은 크로스 그랜트를 요구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인 점, 유력한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일수록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적 의도·목적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위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와 관련하여,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하여 판매 중단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점,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면책비용이나 퀄컴사의 특허우산(부제소 약정의 풀) 구축에 따른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고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점,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 판매처 제한 및 영업정보 제공 의무 부과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의 사업활동이 방해되고 퀄컴사의 유리한 지위가 확보되는 점, 실제로 주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퇴출되고 퀄컴사의 점유율이 상승한 점, 인접한 AP(Application Processor) 시장으로의 경쟁제한 효과가 전이될 우려가 있는 점, FRAND 확약 위반으로 표준설정의 이익은 상실되고 독점이 유발되는 점,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기술 혁신의 유인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 기회와 다양성이 감소한 점, 그리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부당한 라이선스 체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하였다.

(2) 모뎀칩셋의 공급과 라이선스 연계행위

공정위는 퀄컴사가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모뎀칩셋의 공급과 표준필수특허가 포함된 자신이 보유한 특허의 라이선스를 연계시킨 행위에 적용되는 시장지

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과 관련하여, 이 행위는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모뎀칩셋의 공급을 거절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칩셋의 공급을 중단하여 휴대폰 사업이 중단될 위험을 초래하고, 휴대폰 제조사의 FRAND 조건 협상기회를 박탈하여 부당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V. 3. 라. (3))로서 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공정위는 위 행위의 경쟁제한적 의도·목적과 관련하여, 퀄컴사는 상류시장과 하류시장 양자에서 모두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로서 경쟁을 제한할 유인과 그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 점, FRAND 확약에 따른 성실한 협상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할 의도가 인정되는 점, 경쟁 모뎀칩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제한을 통하여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 모뎀칩셋으로 자신의 사업모델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한 점, 실제 라이선스 협상 시 모뎀칩셋의 공급 중단 위협을 활용한 점, 그리고 타 모뎀칩셋 제조사는 사용하지 않는 이례적인 사업방식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적 의도·목적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위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와 관련하여,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성실한 협상 의무를 회피한 행위라는 점, 특히 상류시장과 하류시장 모두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의 FRAND 확약 위반으로 인하여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 모뎀칩셋 시장 및 혁신시장에서 제조비용을 상승시키고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기술혁신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점, 모뎀칩셋 공급을 무기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으로 전이할 우려가 있는 점, 칩셋의 공급과 라이선스의 연계를 통한 특허억류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비용열위를 초래하고 이동통신시장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하였다.

(3) 휴대폰 제조사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행위

공정위는 쉐컴사가 휴대폰 제조사와 자신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포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휴대폰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책정하고 무상의 크로스 그랜트 등의 계약조건을 포함시킨 행위에 적용되는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과 관련하여, 포괄 라이선스를 강요함으로써 휴대폰 제조사의 FRAND 조건 협상 기회와 합리적인 라이선스 선택권을 배제하고 무상의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휴대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특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V. 3. 라. (3))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공정위는 위 행위의 경쟁제한적 의도·목적과 관련하여,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성실한 협상 의무를 회피한 행위라는 점, 이례적으로 모뎀칩셋 공급과 연계하여 불공정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강요한 행위라는 점, 실제로 포괄 라이선스를 강제한 사실이 존재한 점, 이동통신표준 간 독점력을 확장하려는 시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의도·목적이 인정되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무상의 크로스 그랜트를 제공 받아 특허우산을 구축한 점 등을 근거로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위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와 관련하여, 포괄 라이선스 조건으로써 자신의 특허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성실한 협상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의 독점력을 강화한 점,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특허역류를 통하여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뿐만 아니라 모뎀칩셋 시장 및 혁신시장에서의 배제효과를 유발한 점, 무상의 크로스 그랜트로 구축한 특허우산을 통해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자 배제효과를 초래한 점, 무상 크로스 그랜트를 강제함으로써 다른 특허권자의 기술개발 동기를 제한하여 기술혁신을 저해한 점, 그리고 휴대폰 제조사의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휴대폰 가격이 인상되고 제품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기술혁신이 제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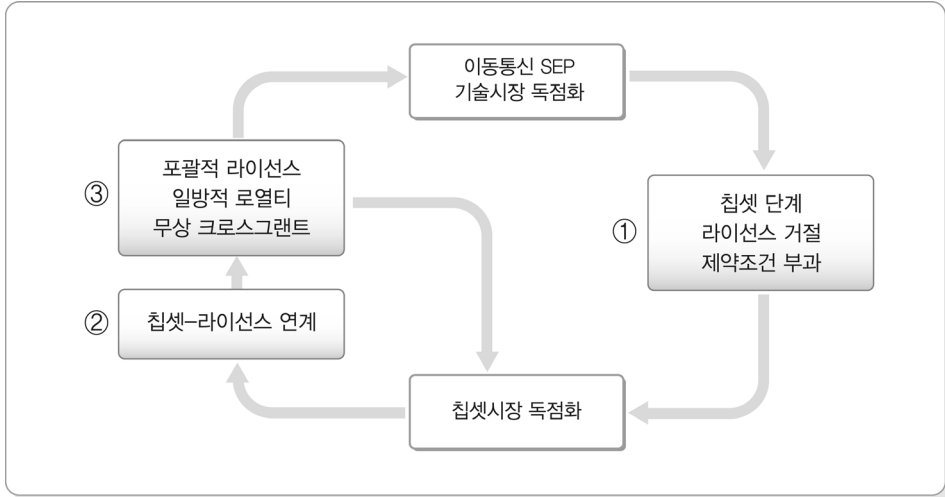
어 결국 최종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공정위는 이 사건 세 가지 행위 중 모뎀칩셋의 공급과 라이선스를 연계시킨 행위와 휴대폰 제조사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라 목)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된다고 하였다.

(4) 위 세 가지 행위의 연계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의 증대

공정위는 제2차 퀄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세 가지 행위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되어 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중첩적으로 실행되면서 상호 전제조건이 되거나 수단이 되어 유기적으로 순환됨으로써 그 경쟁제한 효과가 더욱 공고화되고 증대되었다고 하였다. 즉, 아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제한을 통하여 모뎀칩셋 공급을 무기로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수 있었고, 모뎀칩셋의 공급을 무기로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특허 라이선스 체결을 강제하고 포괄 라이선스, 일방적 실시료 조건, 무상의 크로스 그랜트 등 불공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할 수 있으며, 다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거절·제한함으로써 이들을 특허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동시에,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무상 크로스 그랜트를 포함한 불이익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함으로써 특허우산을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모뎀칩셋 시장과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4] 퀄컴사 사업모델의 순환적 구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퀄컴사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엄중 제재” (2016. 12. 29)

3. 주요 쟁점별 판단

제2차 퀄컴 사건 공정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다투어졌는데, 주요한 쟁점과 그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한 퀄컴사의 특허를 모뎀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 해주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서 라이선스해준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이론을 원용하여³³⁾ 법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전제하고, 퀄컴사 스스로도 모뎀칩셋 관련 표준필수특허를 제공받고 있고 부품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한 사례가 있는 점, 표준필수특허의 개념 및 본질, 실제 모뎀칩셋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퀄컴사의 표준필수특허를 라이선스할 필요가

33) 서울고법 2010. 11. 4. 선고 2009누33777 판결, 서울고법 2008. 11. 19. 선고 2008누2868 판결, 서울고법 2008. 11. 5. 선고 2008누2462 판결 등.

있는 점, 퀄컴사가 FRAND 확약을 제출한 사실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뎀칩셋 제조사는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는 점 등을 근거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⁴⁾

둘째, 퀄컴사는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휴대폰 제조 단계에서 라이선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퀄컴사의 특허 중 모뎀칩셋 단계에 구현되는 특허와 휴대폰 단계에 구현되는 특허를 구분할 수 있고 전자 역시 적지 않으므로 양자를 각 단계에서 라이선스해주고 그에 대한 실시료 수입을 획득함으로써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반박하였다.³⁵⁾

셋째, 퀄컴사는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건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착취적 효과를 가질 뿐이고, 경쟁자 배제효과(경쟁제한성)는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위 행위는 퀄컴사가 모뎀칩셋 시장에서 가진 지배력을 이용하여 FRAND 확약을 회피한 것이므로 단순한 착취적 행위가 아니고, 표준화로 인하여 초래되는 경쟁제한 효과를 제어하는 수단인 FRAND 확약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비용을 증가시켜서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을 저해함으로써 이동통신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였다.³⁶⁾

넷째, 퀄컴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의 대상은 한국에 등록된 특허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퀄컴사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라이선스 정책과 모뎀칩셋 공급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그 효과 역시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 모두에 미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국내시장 및 국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를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등록된 특허도 시장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다만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을 한정하였다.³⁷⁾

34) 공정위 의결 제2017-25호(2017. 1. 27), 97-107면.

35) 공정위 의결 제2017-25호(2017. 1. 27), 159-160면.

36) 공정위 의결 제2017-25호(2017. 1. 27), 168-169면.

4. 제1차 및 제2차 켈컴 사건의 비교

제1차 및 제2차 켈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켈컴사의 행위와 그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을 비교해보면, 일정한 공통점을 가짐과 동시에, 상당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두 사건 모두 상류시장과 하류시장 양자 모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독점력 전이행위가 문제로 되었다. 즉, 두 사건에서 문제로 된 행위 모두 이동통신표준 관련 기술시장에서 다수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함으로써 지배력을 가짐과 동시에, 하류시장인 부품시장에도 참여하여 지배적 지위를 가진 수직적 통합사업자가 양 시장에서 가진 독점력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둘째, 두 사건에서 문제로 된 행위 모두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자신이 표준화 기구에 제출한 FRAND 확약을 위반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1차 사건에서 켈컴사는 자신의 부품을 장착한 휴대폰과 경쟁자의 부품을 장착한 휴대폰에 대한 표준필수특허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책정함으로써 FRAND 확약의 ‘비차별성’ 요건을 위반하였고, 제2차 사건에서는 경쟁 모델칩셋 제조사에 대하여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제한하거나 거절함으로써 FRAND 확약을 위반하였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한 자신의 특허를 라이선스해주면서 포괄 라이선스를 강요하고 일방적인 실시료 조건을 부과하고 무상의 크로스 그랜트를 강요함으로써 상대방의 FRAND 조건 협상 기회를 박탈하고 특허억류를 초래하였다.

셋째, 두 사건에서 켈컴사가 채택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행과 모델칩 등의 부품공급과 관련된 리베이트 지급구조 또는 모델칩셋의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를 연계한 행위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동통신 표준기술 시장과 부품 시장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여 경쟁자를 배제하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제1차 켈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차별적 로열티 책정행위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행위 양자 모두 중첩적으로 모델칩 등 부품시

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고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고, 제2차 퀄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제한 행위와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를 연계한 행위 및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행위는 모두 중첩적으로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한편, 이동통신 표준기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동통신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에 반하여, 제1차 퀄컴 사건과 제2차 퀄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제1차 사건에서 퀄컴사는 표준필수특허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이동통신표준 기술시장에서 가진 지배력을 이용하여 부품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고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지배적 전이가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제2차 사건에서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에 대하여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거절·제한하고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무상 크로스 그랜트나 부제소 약정 등 불이익한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하여 경쟁자를 비용열위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표준 기술시장에서 가진 지배력을 부품시장으로 전이하는 한편, 다시 모뎀칩셋의 공급을 무기로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품시장에서 가진 지배력을 이동통신 관련 기술시장으로 전이하고 나아가 혁신시장에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지배력 전이가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제1차 사건에서 공정위는 하류시장인 부품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에, 제2차 사건에서는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자 배제효과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불이익한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함에 따른 착취적 효과까지 문제로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퀄컴사는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불이익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한 행위는 착취적 효과만을 가질 뿐 경쟁자 배제효과가 결여된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FRAND 확약이 가지는 경쟁정책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착취적 행위가 아니라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경쟁자는 구축할 수 없는 특허우산을 통해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나아가 이동통신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공정위는 제1차 사건에서 문제로 된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이들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데 그친 반면에, 제2차 사건에서는 문제로 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우 포괄적인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즉, 공정위는 적극적 작위명령으로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성실한 협상 의무(기한 내 합의 미도달 시 제3의 기구에 의한 결정)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모뎀칩셋 공급계약에 포함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요구하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하였으며, 라이선스 계약의 수정을 희망하는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 수정절차 및 성실한 협상 의무(기한 내 합의 미도달 시 제3의 기구에 의한 결정)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추가적으로 위와 같은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에 대한 통지명령과 보고명령을 포함시켰다.

IV.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쉐컴사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행과 휴대폰 부품 공급과 관련된 사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두 차례에 걸친 법 집행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1. 표준필수특허 행사행위의 평가 기준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련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타의 재산권 행사의 경우와 차별적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공정위는 쉐컴사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행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지배적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의 공급을 거절한 것이 문제로 된 POSCO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즉, 공정위는 두 개의 쉐컴 사건에서 위 판시 법리에 따라 문제로 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행이 경쟁제한적 의

도· 목적을 가지는지, 그리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는 EU의 경우에는 표준필수특허 행사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도 많이 소개된 Huawei Technologies 사건에서³⁸⁾ 유럽사법재판소는 FRAND 확약이 제출된 표준필수특허는 표준화기구가 선정한 표준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조하려는 모든 경쟁자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해당 특허는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할 것이라는 확약을 제출한 대가로 비로소 표준필수특허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해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창출한 점을 고려할 때, FRAND 조건의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EU 기능조약 제102조를 위반하는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실시자가 명시적으로 FRAND 조건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침해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⁹⁾

즉, 유럽사법재판소는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침해금지명령의 청구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관련시장에서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필요 없이, 문제로 된 특허가 표준화기구가 선정한 표준에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실시허락을 거절함으로써 경쟁자의 제품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점과 특허권자 스스로 표준화기구에 FRAND 확약을 제출한 점을 근거로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⁴⁰⁾ 결국 EU 경쟁법상 표준필수특허 행사행위 중 적어도 FRAND 확약을 위반하는 실시허락의 거절은 이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별개 유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38) Judgment of the Court, 16 July 2015, Case C-170/13, Huawei Technologies Co. Ltd v. ZTE Corp. 동 판결의 내용을 소개한 국내 문헌으로 오성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금지청구권 행사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EU 사례 분석”, 『경쟁법연구』, 제33권(2016), 296-299면 참고.

39) Id. para. 46-53.

40) Id. para. 49-53.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¹⁾

2. 표준필수특허의 필수요소성

공정위는 제2차 쉐넬 사건에서 표준필수특허가 소위 ‘필수요소’(essential element)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중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3호), 이는 경쟁법 이론상 소위 ‘필수설비의 법리’(essential facilities doctrine)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²⁾

그런데 종전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위 규정이 말하는 필수요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⁴³⁾ 삼성전자가 애플사에 대하여 표준필수특허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한 것이 문제로 된 사건에서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권자는 잠재적 실시자에게 FRAND 조건으로 실시 허락할 의무가 발생하여 당해 표준필수특허의 독점적 소유 또는 통제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표준필수특허는 필수요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필수성, 독점적 통제성, 대체불가능성) 중 ‘독점적 통제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필수요

41) EU 경쟁법 문헌 역시 EU 집행위는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하여 침해금지명령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새로운 독특한 유형의 남용행위(new sui generis abuse)로 간주하고 있다고 서술하거나 (O'Donoghue & Padilla, *The Law and Economics of Article 102 TFEU* (2d ed. 2013), p. 708 참고), FRAND 확약을 제출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거절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거절에 관한 종래의 판례 법리와 단절된 ‘별개의 예외적 상황’(standalone exceptional circumstance)이라고 서술하고 있다(Björn Lundqvist, “The Interface between EU competition law and standard essential patents—from Orange-Book-Standard to the Huawei case”, *European Competition Journal*, 2015, pp. 371-372 참고).

42) 위 이론은 당초 미국에서 처음 제시되었는데, 그 후 오히려 EU 집행위와 법원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데 반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일부 하급심 법원이 동 이론을 적용한 바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Verizon Communications v. Law Office of Cutis V. Trinko* 사건에서 위 이론을 수용한 바 없다고 선언하였다(540 U.S. 398, 411 (2004)).

43)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독점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문제로 된 사건에서 신용카드회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망을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이라고 한 바 있고(공정위 의결 제2001-39호, 2001.3.28), 관련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 및 대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로 실시한 바 있다(서울고법 2003.4.17. 선고 2001누5851 판결 및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5709 판결).

소 부합성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⁴⁴⁾ 그러나 제2차 퀄컴 사건에서 공정위는 종전의 견해를 바꾸어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적극적 실시희망자와 합리적인 실시료 수준에 대해 협상한 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보유자가 독점적으로 소유, 통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⁴⁵⁾ 퀄컴사의 표준필수특허가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필수요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⁴⁶⁾

참고로 미국 독점금지법 판례상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필수설비에 해당될 수 있음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래 지식재산권 자체를 필수설비로 인정한 판결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⁷⁾ 이와 관련하여 Hovenkamp 교수 등은 일반적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필수설비이론을 적용하여 강제 라이선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표준화 기구에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해주기로 확약한 경우, 경쟁당국이 합병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조건으로 라이선스해줄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의회가 법률을 통하여 독점금지법과 다른 별도의 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접근을 강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의 라이선스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다.⁴⁸⁾ 또한 필수설비 이론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EU의 경우에도 집행위원회와 EU 법원 모두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거절을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내용적으로 필수설비 이론과 유사한 논리를 사용하면서도 명시적으로 ‘필수설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필수설비 이론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⁴⁹⁾

44)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침해금지청구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2014. 2. 25). 이에 반하여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동 회사가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가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45) 공정위 의결 제2017-25호(2017. 1. 20), 141면, 각주 266.

46) 공정위 의결 제2017-25호(2017. 1. 20), 141-142면. 표준필수특허가 공정거래법상 필수요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로서 이호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1권 4호, 2013, 261면 참고.

47) Herbert Hovenkamp, Mark D. Janis, & Mark A. Lemley, “Unilateral Refusals to License”, 2 J. Competition L. & Econ. 1, 12 (2006).

48) Id. at 16-19.

49) 미국 및 EU 경쟁법상 지식재산권의 실시허락 거절에 관한 법리에 관한 설명은 이호영, “소위 ‘사실상 표준필수특허’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2016년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개정을 중심으로”

3. FRAND 확약의 경쟁법적 의미 강조

공정위는 FRAND 확약이 표준화기구에 참여한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경쟁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FRAND 확약 위반 사실을 표준필수특허 행사행위의 경쟁제한적 의도·목적과 경쟁제한의 우려를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즉, 표준필수특허는 기술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닌 표준화기구의 표준선정이라는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지배력을 획득한 것이고 그 대가로 일반적인 특허권자가 가질 수 있는 ‘배제’와 ‘차별’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FRAND 확약을 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경쟁제한적 의도·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⁵⁰⁾ 또한 표준화기구가 FRAND 조건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표준선정으로 인하여 획득한 독점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므로 FRAND 확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쟁제한 우려가 인정된다고 하였다.⁵¹⁾

특히,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를 실시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하류시장에도 참여하고 있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인 경우에 하류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유인과 인식이 존재함을 쉽게 인정하고, 이러한 사업자가 FRAND 확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경쟁제한적 의도·목적뿐만 아니라 하류시장에서 시장붕쇄 효과가 발생할 우려 역시 비교적 쉽게 인정하였다.

4. FRAND 확약 위반의 배제적 효과에 초점

공정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사실을 경쟁제한적 의도·목적과 경쟁제한의 우려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로열티 수준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거나 퀄컴사가 책정한 로열티 수준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은 회피하였다. 즉, 제1차 퀄컴 사건에서와는 달리 제2차 퀄컴 사건에서는 퀄컴사가 휴대전화 제조사에게 자

으로”, 『경영법률』, 제26집 제3호(2016), 388-394면 참고.

50) 공정위 의결 제2017-25호(2017. 1. 20.), 101면.

51) 공정위 의결 제2009-281호(2009. 12. 30.), 42면.

신의 특허를 라이선스해주면서 전체 휴대폰 가격의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책정한 것이 문제로 되었는데,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그 로열티 수준이 FRAND 조건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수준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소위 ‘가격남용’을 금지하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대신 포괄 라이선스를 강제하여 휴대폰 제조사의 FRAND 조건 협상기회를 박탈하고 무상의 크로스 그랜트를 요구하는 등 특허억류를 통하여 모뎀칩셋 시장과 혁신시장에 미치는 배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다.

공정위의 위와 같은 태도는 비록 국내·외적으로 FRAND 조건 로열티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⁵²⁾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FRAND 조건 로열티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허침해나 라이선스계약 관련 소를 심리하는 법원이 아닌 경쟁당국이 먼저 FRAND 조건 로열티인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회피하고, 대신 FRAND 확약이 제출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자에게 인정되는 FRAND 조건 협상기회 등 절차적 보장을 근거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 역시 FRAND 확약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경쟁자 배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로 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였다고 할 수 있다.⁵³⁾ 따라서 직접적으로 배제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FRAND 조건을 초과하는 높은 로열티를 부과함으로써 실시자에 대하여 착취적 효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규명되어야 할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52) 근래 국내에서도 FRAND 조건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 예컨대, 권영관, “표준필수특허의 FRAND 실시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2호(2016), 152-174면, 오승환,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3호(2016), 70-89면, 오승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행위의 규제”, 『경쟁법연구』, 제34권(2016), 114-117면, 윤신승, “FRAND 확약에 위반되는 실시료에 대한 경쟁법상의 규제”, 『사법』, 제39호(2017), 13-34면 참고.

53) FRAND 조건 실시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실시료 산정 근거와 협의 절차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서 오승환,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3호(2016), 81-85면 참고.

5. 혁신시장 및 소비자후생 효과의 증시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가 초래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이를 실시한 제품시장뿐만 아니라 혁신시장과 최종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파악하였다. 예컨대, 제2차 퀄컴 사건에서 퀄컴사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행위로 인하여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고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기술혁신의 유인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 기회와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퀄컴사가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포괄 라이선스를 강제하고 일방적인 실시료 조건 및 무상 크로스 그랜트를 강제한 행위로 인하여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지배력이 강화되고 표준필수 기술을 실시하는 제품시장에서 경쟁자 배제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특허권자의 기술개발 동기를 저해하여 혁신이 저해되고, 휴대폰 제조사의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휴대폰 가격이 인상되고 제품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기술혁신이 제한되어 결국 최종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그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하였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가 초래하는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위와 같은 접근방법은 기타의 유체재산권이 문제로 된 경우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표준화기구에 의한 표준설정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표준의 광범위한 적용을 통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점과 FRAND 확약은 표준선정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이러한 편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6. 실시허락 의무와 역외 라이선스 관행을 포함한 적극적 시정조치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 행사행위가 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 단지 문제로 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행위가 관련 기술시장과 제품시장 및 혁신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특히,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거절이 문제로 된 경우에는 법 위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실시허락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강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절차까지 상세히 정하고, 나아가 이미 체결되어 유효한 라이선스 계약에 경쟁제한적인 라이선스 조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절차까지 상세히 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행이 국내시장에 초래한 경쟁제한 효과를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쟁당국의 관할 밖에서 등록된 특허의 역외 라이선스 관행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국제예양(international comity)의 원칙에 반하고, 특허 행사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에 대하여 다른 경쟁법제의 경쟁당국이 취하는 접근과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⁵⁴⁾

이와 관련하여 제2차 퀄컴 사건에서 공정위는 국내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퀄컴사가 보유한 특허 전체의 라이선스 관행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면서도,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라이선스 계약에 한하여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는 외국에 소재한

54) 예컨대, Wong-Ervin, Kobayashi, Ginsburg & Wright, “Extra-Jurisdictional Remedies Involving Patent Licensing”, *Antitrust Chronicle*, Vol. 1, Winter 2016,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pp. 13-17 참고.

외국 항공사업자들 사이의 가격담합이 문제로 된 항공화물운송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조의2가 역외적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판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⁵⁵⁾

V.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쉐컴사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두 차례에 걸친 법 집행사례는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상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우리나라에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에 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FRAND 확약이 가지는 경쟁법적 의미를 확인하면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경쟁법 집행을 통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할 것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위 사례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즉,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행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타 유체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표준필수특허를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필수요소로 인정하였으며, FRAND 확약 위반사실을 문제로 된 행위의 경쟁제한적 의도·목적과 경쟁제한의 우려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나아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허기술 라이선스 시장과 관련 제품시장 뿐만 아니라 혁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최종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고려하였다.

다만, 공정위는 문제로 된 쉐컴사의 행위가 FRAND 확약을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쉐컴사가 부과한 로열티 수준이 FRAND 조건을 위반하

55) 나아가 대법원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로 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132 판결 등).

는 과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착취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자의 FRAND 조건 협상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관련 제품시장과 혁신시장 및 소비자 후생에 초래하는 배제적 효과를 인정하였다. 그 밖에도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관행이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에 단순히 문제로 된 행위의 위법성을 선언하고 그 중지를 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실시허락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의 라이선스 계약의 수정을 포함한 적극적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다룬 퀄컴사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들에 대하여 이미 일본, 중국 및 대만의 경쟁당국이 법 위반임을 인정하였고, 현재 EU와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경쟁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법 집행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향후 비교법적 측면에서 관련 쟁점에 관한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권영관, “표준필수특허의 FRAND 실시로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2호(2016).

윤신승, “FRAND 확약에 위반되는 실시료에 대한 경쟁법상의 규제”, 『사법』, 제39호(2017).

오성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금지청구권 행사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EU 사례 분석”, 『경쟁법연구』, 제33권(2016), 296-299면 참고.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3호(2016).

오승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경쟁법연구』, 제34권(2016).

이호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1권 제4호(2013).

이호영, “소위 ‘사실상 표준필수특허’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2016년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개정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26집 제3호(2016).

홍대식,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퀄컴 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64권 제11호(2015).

홍명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 규제 가능성 검토”, 『경쟁법연구』, 제34권(2016).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281호(2009. 12. 30).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7-25호(2017. 1. 20).

서울고법 2013. 6. 19. 선고 2010누393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132 판결.

▣ 국외문헌

Herbert Hovenkamp, Mark D. Janis, & Mark A. Lemley, Unilateral Refusals to License, 2 J. Competition L. & Econ. 1 (2006).

- Jay P. Kesan & Carol M. Hayes, FRAND's Forever: Standards, Patent Transfers, and Licensing Commitments, 89 *Indiana L.J.* 231, 240-244 (2014).
- Anne Layne-Farrar, Moving Past the SEP RAND Obsession: Some Thoughts on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Unilateral Commitments and the Complexities of Patent Licensing, 21 *Geo. Mason L. Rev.* 1093, 1095 (2014).
- Björn Lundqvist, "The Interface between EU competition law and standard essential patents—from Orange-Book-Standard to the Huawei case", *European Competition Journal* (2015).
- O'Donoghue & Padilla, *The Law and Economics of Article 102 TFEU* (2d ed. 2013).
- Joanna Tsai & Joshua D. Wright, "Standard Set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Role of Antitrust in Regulating Incomplete Contracts", 80 *Antitrust L.J.* 157 (2015).
- Wong-Ervin, Kobayashi, Ginsburg & Wright, "Extra-Jurisdictional Remedies Involving Patent Licensing", *Antitrust Chronicle Vol. 1*, Winter 2016,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 European Commission - Press release, "Antitrust: Commission sends two Statements of Objections on exclusivity payments and predatory pricing to Qualcomm" (8 Dec. 2015).
- Judgment of the Court, 16 July 2015, Case C-170/13, Huawei Technologies Co. Ltd v. ZTE Corp.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Case 5:17-cv-00220, Federal Trade Commission's Complaint for Equitable Relief (Jan. 17, 2017).

Abstract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Decisions against Qualcomm

Ho Young Le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KFTC) two decisions against Qualcomm on its standard-essential patent (SEP) licensing practice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s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bove all, they provided opportunities for full-fledged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and competition law in Korea, and clearly recognized the competition policy meaning of the FRAND commitment. The KFTC also sent important signals for competition law enforcement on IP-related issues in the future. First, it applied the same criteria as in cases where other tangible property rights are involv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SEP licensing practice is a violation of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Second, it changed its prior position and acknowledged that the SEP constitute the essential element under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Third, it put an emphasis on the breach of FRAND commitments as a basis of finding anti-competitive intent or purpose and anti-competitive concerns. Furthermore, in assessing the illegality of the FRAND commitment breach by the SEP holders, the KFTC did not consider only its impact on the patented technology licensing market and related product markets, but also on the innovation market and the final consumer's welfare.

On the other hand, the KFTC did not clearly say that the level of royalties itself imposed by Qualcomm was excessive or unfair. While it found that Qualcomm's conduct in question was a violation of the FRAND commitment by focusing on procedural aspects of the FRAND commitment.

Lastly, the KFTC did not only declare the illegality of Qualcomm's SEP licensing practices, but also impose a licensing obligation with specific procedures for negotiating license terms among the parties.

* Professor of law,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 **주제어:** 퀄컴, 표준필수특허, 프랜차이즈,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라이선스거절, 차별적 로열티, 조건부 리베이트, 포괄적 라이선스

- **key words:** Qualcomm, Standard-essential patents, FRAND commitments,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Abuse of market dominance, Refusal to license, Discriminatory royalty, Conditional rebates, Blanket license

논문투고일자: 2017.11.02.
심사의뢰일자: 2017.11.05.
게재확정일자: 2017.11.18.